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 26 선고 2020가단10227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정규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구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주경선

변론 종결 2020. 11. 10.

판결 선고 2021. 1.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 B은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값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며, 피고 C는 피고 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9. 5. 3.접수 제374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7. 6. 15.경부터 2019. 7. 9.경까지 부산 중구 E, F호에서 석유제품 운반선(이하 '급유선'이라고 한다)인 G 등을 용선하여 석유수출입업자들로부터 석유제품(수입신고 수리 전에 보세구역 내에 보관되는 외국물품으로 외항선의 연료로 사용되는 외국 선용품이다, 이하 '면세유'라고 한다)의 운송의뢰를 받아 외항선에 공급하는 'H'의실경영자인 사람이고, 피고 B은 2017. 6.경부터 2019. 5.경까지 H의 명의상 대표로서급유선 G, I, J의 선장으로 승선하면서 면세유 수송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급유선 K의 실제 소유자로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면세유를 취득·판매하던사람이다.

다.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667호 사건에서 별지 범죄사실 목록 기재와 같이 면세유를 횡령하거나 장물인 면세유를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원고는 징역 1년 8월을, D은 징역 4년을, 피고 B은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았다.

라. 원고와 D 및 피고 B은 2018. 8. 16. 공증인가 법무법인 L 증서 2018년 제00416호로 '피고 B이 2018. 8. 16.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2018. 8. 31.부터 2020.3. 31.까지 20회에 걸쳐 매월 말일 1,000만 원씩 원고에게 변제하되, 2018. 8. 17.부터2020. 3. 31.까지 매월 말일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며, D은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한편, 피고 B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5. 3.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9. 5. 3. 접수 제37417호로 2019. 5. 3.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피고 B의 처인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1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H을 D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피고 B에게 2018. 2.경 현금 2,000만 원, 2018. 3.경 현금 5,000만 원, 2018. 4.경 현금 2,500만 원, 2018. 5.경 현금 3,600만 원 및 현금 2,000만 원, 2018. 8. 16. 현금 5,000만 원, 2019. 1. 14. 송금하는 방법으로 5,000만 원 등 합계 2억 5,1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현금으로 빌려준 부분에 대하여는 2018. 5.경 빌려준 3,600만 원 중 100만 원을 제외한 합계 2억 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송으로 피고 B에게 위 각 대여금 중 2018. 5. 빌려준 현금 3,600만 원 중 100만 원 및 2019. 1. 14. 송금한 5,000만 원 등 대여금 합계 5,1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D과 H을 동업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원고로 부터 현금을 차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9. 1. 14. 위 5,000만 원이 입금된 계좌는 H의 실경영자인 D이 사용하던 계좌이어서 피고 B이 위 계좌로 이체된 위 5,000만 원도 차용한 사실이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돈은 장물인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 선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피고 B이 H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하지만,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실경영자 D에게 H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정증서상 주채무자도 H의 명의상 대표자인 피고 B으로 한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18. 5. 28.경부터 2019. 5. 14.경까지 약 1년간 42회에 걸쳐 H으로부터 장물인 면세유 973,800리터 시가 581,214,665원 상당을 공급받았을 뿐만아니라 그 무렵 H의 직원으로 4대보험까지 가입하는 등 D 및 피고 B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을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H의 실제 운영자는 D이고 피고 B은 D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만 대여하였음을 알았다고 판단되는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과 피고 B이 H을 동업으로 운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8. 5.경 H 소속 선원들의 급여 명목으로 3,600만 원을 빌려주었고, 2019. 1. 14. 유류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H의 운영비 명목으로 합계 2억 5,1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인데, H의 명의상 대표인 피고 B이 아니라 실경영자인 D이 위와 같은 명목의 돈을 빌렸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원고가 피고 B에게 2018. 5.경 현금 3,600만 원을 포함하여 현금으로 합계 2억 100만 원을 빌려주었거나 피고 B이 위 2억 10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원고의 지인인 M이 2019. 1. 14. 피고 B의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H의 실경영자인 D이 위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B이 위송금에 관여하였거나 위 5,000만 원을 사용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 B은 D으로 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H의 급유선에 승선하여 면세유 수송업무를 하였고, 실경영자인 D이 자금을 출납하고 선원들을 채용하는 등으로 H을 경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5,1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위 2의 가.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H을 D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피고 B에게 합계 2억 5,1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 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피고 B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게 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피고 B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무자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위 제2의 나. 항에서 살펴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합계 2억 5,1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인 대여금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춘근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김해시 O에 있는 P아파트 Q동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김해시 O 대 32266.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R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조 59.94㎡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 32266500의 54928, 끝.

범죄사실 목록

1. 업무상횡령

가. D, 피고 B의 공동범행(급유선 G, I 관련)

D과 피고 B은 함께 2018. 5. 25. 15:35경부터 17:50경까지 부산항에 정박 중인 외항선 S에 면세유를 공급하면서 그 중 시가 7,488,977원 상당의 경유 11,400리터를 급유하지 아니하고 남겨와 피해자 T(주)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A에게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5.경부터 2019. 4. 5.경까지 27회에 걸쳐 유조선 향해 용선계약에 위배하여 외항선에 급유하지 않고 남겨와 T(주) 등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A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나. D, U, V의 공동범행(급유선 W 관련)

D, U, V은 함께 2018. 12. 3. 16:47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5부두에서 피해자 T(주)의 면세유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부산항에 정박 중인 바하마 선적 외항선 X에 면세유를 공급하기 전 시가 3,701,576원 상당의 경유(MGO) 6,600리터를 A 소유의 K에 우선적으로 양하해 판매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3.부터 2019. 5. 2.까지 14회에 걸쳐 유조선 향해 용선계약에 위배하여 외항선에 급유하지 않고 남겨와 T(주) 등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A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다. D, 피고 B, V의 공동범행(급유선 J 관련)

D, 피고 B, V은 함께 2019. 5. 14. 17:00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5부두에서 정박 중인 러시아 선적 외항선 Y에 공급해야할 시가 128,303,870원 상당의 경유(MGO) 199,600리터를 피해자 T(주)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A의 K와 선명 불상의 유류바지선에 이적해 주는 방법으로 A에게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라. D

D은 2019. 8. 21. 22:25경 면세유를 피해자 Z(주)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부산항에 정박 중인 중국 선적 외항선 AA에 면세유를 공급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외항선 유류담당 선원에게 톤당 미화 170달러로 계산하여 한화 2,082,500원 상당의 미화 1,700달러를 지급하고 시가 8,027,959원 상당의 경유(MGO) 13,000리터(10MT)를 공급하

지 않고 가지고 와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21.경부터 2019. 9. 4.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4,065,885원 상당의 면세유 23,000리터를 횡령하였다.

2. 장물취득

원고는 2018. 5. 28. 19:00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5부두에서 위 D, 피고 B으로부터 D과 피고 B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면세유인 경유(MGO) 11,400리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99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2회에 걸쳐 시가 581,214,665원 상당의 면세유 973,800리터를 경유(MGO)는 드럼당(200리터) 7만 원, 방카 C유(MF380)는 드럼당 2만 원의 대금을 각 지급하고, D, 피고 B으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였다. 끝.